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2019. 9. .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 내용에 맞게 조문 제목 수정

2. 수정 주요내용

- 조문 제목 수정(안 제8조)

- 개정안
 - 제8조(관리인 등 겸직신고)
- 수정안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 제목 “(관리인 등 겸직신고)”를 “(관리인 등 겸직 금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 ----- 한다----- ----- -- 윤리실천규범 --- -----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 ----- ----- ----- ----- ----- ----- -----.	제2조(윤리강령) (개정안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 ----- 복리 증진----- ----- ----- -----.	2. (개정안과 같음)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개정안과 같음)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 ----- ----- ----- ----- ---.	제3조(윤리실천규범) (개정안과 같음)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u> 된다.	1. ----- ----- ----- 아니 된다.	1. (개정안과 같음)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u>아니</u> 된다.	2. ----- ----- ----- 아니 된 다.	2. (개정안과 같음)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u>아니</u> 된다.	3. ----- ----- ----- 아 니 된다.	3. (개정안과 같음)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	4. ----- ----- ----- -----	4. (개정안과 같음)

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아니 된다.

5. -----

----- 아니 된다.

6. -----

-----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

-----.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8. (생 략)

제5조(검직신고) ① 의
원이 지방자치법 제3
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1호 서
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
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
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결
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8. (현행과 같음)

제5조(검직신고) ① --

--- 구미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
다)----- 서식,
검직사실이 없는 경
우에는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른다.

② -----

변경신고-----
-.

③ -----

----- 검
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삭
제>

④ 의장은 시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
조제2항에 위반된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8. (개정안과 같음)

제5조(검직신고) ① (개
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
무와 관련된 영리행
위를 하지 못한다. 다
만, 의원의 직업이 농
업인인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따
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
원에 한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
른 시의원의 겸직신
고 내용을 연 1회 이
상 점검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
한사항 신고) ① 시의
원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
3조의2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자
료제출요구를 한 경
우에는 성실하게 수

⑤ (개정안과 같음)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개정안과 같음)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
한사항 신고) ①·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신고) ① 시의원은 구미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구미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
2. 구미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제8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구미시로부터 운영
비·사업비 등을 지
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

② 의장은 시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시의
원이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본
회의 또는 윤리특별
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
6조제2항에 위반되
어 실시한 겸직사임
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
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시의원이 구미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제9조(징계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5. 시의원이 구미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금 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를 하는 경우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다.	
--	---	--